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2021. 10. 27.

행정위원회

1. 심사경과

가. 제출일자: 2021년 10월 8일

나. 발 의 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다. 회부일자: 2021년 10월 13일

라. 상정일자: 제233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행정위원회 제5차 회의(2021. 10. 22.) 상정 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자: 최봉희 의원)

가. 제안이유

-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
- 문화예술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안 제5조 ~ 제6조)
-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김옥연)

○ 본 조례안은

- 「문화예술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 및 「지역문화진흥법」 과 같은 법 시행령에 따라 우리구의 문화예술의 진흥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규정하여 지역 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마련된 조례로서, 총 9개의 조문과 1개의 부칙으로 구성되어 있음.

현행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 조례」 에서 구의 문화예술 및 생활체육 진흥에 관하여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성질이 다른 사무를 하나의 조례에서 관장하는 것은 효율성이 떨어지므로 사무를 구분하여 조문을 분리하고 체계화할 필요성이 제기됨에 따라 각각 조례를 정비하고자 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을 본 조례로 따로 정한 것으로 보임.

○ 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 안 제1조에서 「문화예술진흥법」 및 「지역문화진흥법」 의 입법 취지에 따라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

상에 이바지하기 위한 조례 제정 목적을 명시하고, 안 제2조에서는 “문화예술”, “전통문화”, “지역예술인”, “지역문화예술단체” 등 용어를 정의함.

- 안 제4조는 지원 대상 사업에 관한 사항으로 지역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한 세부적인 대상 사업을 명시하고, 이에 대한 공간 지원이나 보조금 지원 등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안 제5조부터 제6조는 문화예술 강좌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강좌 대상 과목의 선정, 강사 위촉 및 해촉, 수강료의 징수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음.
- 안 제8조는 문화예술 행사, 공연, 강좌 운영을 위탁할 수 있게 하고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르도록 하여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한 것으로 보임.
- 부칙에서 시행일을 2022년 1월 1일로 정한 것은 현행조례에서 생활체육진흥에 관한 조문 정비를 위한 유예기간을 둔 것으로 보임.

○ 검토 결과

- 본 제정조례안은 성격이 다른 문화예술과 생활체육 진흥에 관한 사무가 하나의 조례로 포괄하여 규정하던 것에서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문만을 분리하여 정비하고,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영등포구의 지역문화예술의 특색을 반영하고 활성화시키는 조례 제정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최봉희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385
----------	-----

발의년월일: 2021년 10월 일

발의자: 최봉희 의원 외 5명

1. 제안이유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조례의 목적 및 정의 (안 제1조 ~ 제2조)

나. 지원 대상 사업 (안 제4조)

다. 문화예술 강좌 운영 및 수강료 (안 제5조 ~ 제6조)

라. 사업의 위탁에 관한 규정 (안 제8조)

3. 제정안 : “별첨”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

나. 예산조치 : 필요 시 반영

다. 입법예고(2021. 10. 8. ~ 10.13.) 결과 : 의견 없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문화예술진흥법」,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의 문화예술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문화예술을 계승·발전시키고 지역문화예술의 창달과 구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문화예술”이란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문화예술을 말한다.

2. “전통문화”란 선조들로부터 전승되어 온 고유한 문화로 가치있고 계승할 만한 문화유산 및 세시풍속 등을 말한다.

3. “지역예술인”이란 영등포구(이하 “구”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문화 예술 활동을 업(業)으로 하는 사람 중 다음 각 목의 모든 요건을 충족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1년 이상 거주한 문화 예술 분야 종사자

나. 해당 문화예술 분야의 관내 협회 또는 단체에 가입하여 활동 실적이 있는 문화예술 분야 종사자

4. “지역문화예술단체”(이하 “단체”라 한다)란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이 인정하는 문화예술 진흥을 위한 활동이나 사업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시책과 장려) 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구의 문화예술 진흥 및 발전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고 서울특별시 영등포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문화예술 활동을 장려하며 이를 적극 보호·육성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구민의 문화향유 기회 확대와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각종 문화

예술 행사, 축제 등을 개최하고, 관련 프로그램을 개발·보급하며, 지역예술인 및 단체의 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다.

제4조(지원 대상 사업) ① 구청장은 제3조에 따라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과 구민의 문화예술 활동을 권장·육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역예술인 또는 단체의 사업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기반시설의 확충 및 개선
2. 구의 문화예술(전통문화예술을 포함한다) 관련 공연, 전시, 강좌 등
3. 문화예술의 국내외 교류 및 활성화
4. 지역 전통문화의 발굴, 전승, 보존을 위한 사업
5. 지역문화예술 전문 인력 양성 및 지원
6. 지역예술인 및 단체 등의 문화예술 관련 활동을 위한 시설 등 공간 지원
7. 문화예술강좌(위탁강좌 포함)의 설치·운영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라 보조금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5조(문화예술 강좌 운영) ① 구청장은 지역문화발전과 구민의 문화욕구 충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문화예술강좌(이하 “강좌”라 한다)등을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강좌 대상 과목은 구민의 선호도, 내용의 다양화, 보급의 필요성 등을 감안하여 구청장이 정한다.

③ 구청장은 해당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강사를 위촉할 수 있으며, 위촉된 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④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강사를 위촉해 제할 수 있다.

1. 지도강사로서 품위를 훼손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강좌 운영을 태만히 할 경우

2. 해당 강좌 폐지 및 과정 종료 등 강좌 운영을 할 수 없을 때

제6조(수강료) ① 강좌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수강생에게 강좌 운영에 따른 최소한의 경비를 수강료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수강료 금액, 징수 수납 등 수강료 관련 세부 규정은 구청장이 별도로 정한다.

제7조(관람료) 구청장은 문화예술 행사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이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에서 관람료를 징수할 수 있다.

제8조(사업의 위탁 등) ① 구청장은 문화예술 진흥사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행사 및 공연, 강좌 운영의 일부 또는 전부를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위탁할 경우에는 그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9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이 조례는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